

	<h2>성과관리센터 운영 규정</h2>	문서번호	4-1-10		
		제정일	2020. 03. 13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성과관리 센터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성과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기능·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범위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
2. 대학 성과지표 데이터의 수집·분석
3. 교육 수요자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, 시행, 분석 및 관리
4. 대학 성과관리 결과의 공유
5. 대학 자체 평가에 관한 업무
6. 관련 위원회 운영 지원(자체평가위원회)

제3조(조직) ① 본 센터에는 기획처 산하에 두며 센터에는 성과관리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, 운영위원회,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본 센터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간) ① 대학 성과관리 전반의 사항과 센터 운영의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성과관리센터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 1. 위원장은 성과관리센터장으로 한다.
 2.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본 대학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 3.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 2. 대학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 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4. 대학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
 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	<h2>성과관리센터 운영 규정</h2>	문서번호	4-1-10		
		제정일	2020. 03. 13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성과관리 센터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